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16년부터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(이하 “전공의법”)」이 시행된 이후 수련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, 근무여건 및 처우, 교육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전공의 수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,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,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

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과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등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음. 이에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행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 제6호의 “3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: 1명	1.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: 1명
2.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: 3명	2.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: 3명
3.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: 2명	3.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: 2명
4.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: 3명	4.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: 3명
5.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: 1명	5.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: 1명
6.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: <u>3명</u>	6.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: <u>5명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의료인력정책과	
연락처	044-202-2435 / 2436